

[서식 예] 답변서(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민법 제580조 해제 항변)

답 변 서

사건번호 2000가소000 매매대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기초사실관계

피고는 20○○. ○. ○. 원고와 부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 ○. ○. 원고로부터 부품을 인도받았지만, 그 하자로 20○○. ○. ○. 원고에게 인도받은 부품을 반환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합니다.

2. 민법 제580조의 해제권 행사

피고는 20〇〇. 〇. 〇. 원고와 부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고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인지문의하였고, 원고는 매도하는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고 보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한 부품은 그러한 내한성을 갖추지못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건은 모두 불량



처리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알리고 매수한 부품 나머지를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원고가 20〇〇. 〇. 〇. 미고에게 인도한 부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고, 피고는 이 부품으로는 물건을 제조할 수 없어서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용이막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